

배포 2026. 7. 14.(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의 절차 마련
-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지방정부) 및 지원전략(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세부 추진 절차 마련
- 사전 공모,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자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을 위한 지방·중앙정부의 협력체계 구성·운영 방식 마련 <고등교육법시행령>

지역성장 인재양성(이하, 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을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였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 지원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 주관 시·도지사, 대학총장)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를 명확히 하였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 연장 등의 절차를 체계화하였다. 규제특례의 신청을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학기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누어 운영하고,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추진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②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체계를 시도 주도로 전환 <지방대육성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수정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시도의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입학허가 취소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을 추가 <고등교육법시행령>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입학허가 취소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

이에 따라,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평가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 사전 공모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응시하여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우성 (044-203-6232)
		담당자	사무관	김혜민 (044-203-6235)
담당 부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학사정관 부정청탁)>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	책임자	과장	신진용 (044-203-6885)
		담당자	사무관	오명준 (044-203-689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학육성계획)>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우성 (044-203-6232)
		담당자	사무관	김혜민 (044-203-6235)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시·도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설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지원기관과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시·도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초광역전담기관을 시·도가 공동으로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역별 지원기관·전문기관 및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요건, 규제특례의 신청 방법 및 적용기간 연장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허가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추가하여 공정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안 제42조의4제3호 신설)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추가함.

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지역별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등
(안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 신설)

1)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지역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지원기관의 장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다.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1조의4 및 제71조의5 신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다른 시·도

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관계 시·도지사는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초광역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2) 초광역전담기관에 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계 시·도가 정하는 상호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시·도지사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라.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1조의7 신설)

- 1)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에 재정·성과관리, 협업체계, 규제특례, 지방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재정경제부,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의 차관을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마. 규제특례의 신청 방법, 관리·감독 및 적용기간의 연장 등(안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 신설)

- 1)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신청서에 해당 규제특례가 학교의 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함을 설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직전 학년도의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고,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 적용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 연장신청서에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연장의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2. ~ 5. 12., 4. 20. ~ 6.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대학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 추가로 공정한 학생선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2조의4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제71조의2를 제71조의14로 하고, 제4장의2(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71조의2(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학교의 장 등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위원의 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별,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의 특성화 종류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등) ①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전년도 업무실적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1조의4(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법 제5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른 다른 시·도 간의 협업체계(이하 “지역 간의 협업체계”라 한다)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제71조의5(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이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초광역전담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설립한 관계 시·도(이하 “관계 시·도”라 한다)의 재정지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간의 협업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시·도의 장(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 중에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상호 규약(이하 “상호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관계 시·도지사 1명
 2. 제4항제3호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상호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 1명
- ④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

는 부지사로 한다) 각 1명

2. 교육부에서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의6(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이건의 조정) ①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건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건 조정의 대상,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등 이건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단독으로 이건 조정을 요청하는 관계 시·도지사는 그 요청 사실을 다른 관계 시·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견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필요성, 이견 조정의 세부 절차 등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도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도 간의 이견을 조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견 조정의 결과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1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9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성과관리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법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협업체계 전문위원회: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및 연장 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육성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 같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대학

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실적 심의 등에 관한 사항

5. 특성화 지방대학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9조의7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2. 법무부차관

3. 고용노동부차관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9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의8(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성과관리) ①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주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수행주체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주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1조의9(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 ①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시·도 사업성과 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59조의2에 관한 전년도 시·도의 사업성과 및 법 제59조의5에 관한 전년도 시·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운영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시·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시·도 사업성과 평가등의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사업성과 평가 등의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법 제59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의10(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

담인력을 갖출 것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업무
3.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4. 지원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5. 법 제59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지원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의11(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규제특례가 학교의 발전과 법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함을 설명하는 자료
 2.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에 관한 자료
 3.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제59조의10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손해 및 부작용과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12(규제특례의 관리·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의 이행 현황
3.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가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여부
4.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9조의11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제특례 적용 대상 학교의 명칭 또는 학과명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9조의11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

의 장 또는 시·도지사(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연장된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1조의13(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해당 규제특례의 연장 필요성
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현황(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71조의2 관련)”을 “(제71조의14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1조의5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 ----- ----- ----- ----- ----- ----- ----- ----- ----- -----말한 <u>다. 이하 같다</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 ----- ----- ----- ----- ----- ----- -----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
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
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71조의2(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
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
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
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의 교육감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학교의 장 등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위원의 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별,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의 특성화 종류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

<신 설>

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대표하
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설
립 등) ①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별 지원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
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신 설>

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전년도 업무실적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1조의4(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법 제5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신 설>

및 해당 기관에 소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른
다른 시·도 간의 협업체계
(이하 “지역 간의 협업체계”라
한다) 구축·운영에 관한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제71조의5(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초광
역협업지원위원회(이하 “초광
역협업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
 -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
 - 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초광역전담기관의 연도별 업
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설립한 관계 시·도(이
하 “관계 시·도”라 한다)의
재정지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간의 협업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초광
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
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
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시·도의 장(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 중에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상호 규약(이하 “상호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관계 시·도지사 1명

2. 제4항제3호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상호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 1명

④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각 1명

2. 교육부에서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신 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초광
역협업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⑦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협업지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협업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의6(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
축·운영에 관한 이건의 조정)

①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59
조의5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에게 이건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건 조정의 대상, 관

계 시·도지사의 의견 등 이견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단독으로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관계 시·도지사는 그 요청 사실을 다른 관계 시·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 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견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필요성, 이견 조정의 세부 절차 등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도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도 간의 이견을 조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견 조정의 결과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① 법 제59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
별 전문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성과관리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재
정적 지원 및 법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협업체계 전문위원회: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법 제59

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및 연장 등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육성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
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
본계획의 수정, 같은 법 제6조
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대학
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같은 법 제13조제
3항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실
적 심의 등에 관한 사항

5. 특성화 지방대학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9조의7제3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
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
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2. 법무부차관

3. 고용노동부차관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9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신 설>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⑧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의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
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의8(지역혁신중심 대학지
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성과관리) ① 시·도
지사는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
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수행주
체(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
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
하여 사업수행주체에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
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수행주체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주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1조의9(지역혁신중심 대학지

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
부장관의 성과관리) ① 시·도
지사는 법 제59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시·
도 사업성과 평가등”이라 한다)
를 위하여 법 제59조의2에 관한
전년도 시·도의 사업성과 및
법 제59조의5에 관한 전년도 시
·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운영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교육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
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
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도 사업성
과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
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
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시·도 사업성
과 평가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시·도 사업성과 평가등의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사업성과 평가등의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법 제59조의8제4항

<신 설>

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의10(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의9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는 것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업무

3.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4. 지원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5. 법 제59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지원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신 설>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의11(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규제특례가 학교의 발전과 법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함을 설명하는 자료
2.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

에 관한 자료

3.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제59조의10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손해 및 부작용과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 여부
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
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
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

<신 설>

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
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12(규제특례의 관리·감
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
는 시책의 이행 현황

3.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가 부작용
을 유발하는지 여부

4.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9조의11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제특례 적용 대상 학교의 명칭 또는 학과명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9조의11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불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

<신 설>

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교
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족
하지 못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11
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
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
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
(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법
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
다)는 법 제59조의10제9항에 따
른 규제특례 적용기간(법 제59
조의12제1항에 따라 연장된 적
용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
과를 교육부장관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1조의13(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해당 규제특례의 연장 필요성

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현황(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제71조의2</u> (생략)	<u>제71조의14</u> (현행 제71조의2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35

붙임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대 학 및 지 역 균 형 인 재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시·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지원전략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3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통보 등(안 제2조 및 제3조)

- 1) 시·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2)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수정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할 수 없는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 1)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작성하여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조정하여 작

성한 지원전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세부 지원전략을 종합·조정하여 작성한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20. ~ 6.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 등”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체 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체 사업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도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시·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변경한 시·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립한 시·도 기본계획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도 및 지방대학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조직·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3. 지역인재의 취업 및 지역정주 현황
4. 지역 산업기반 시설 및 일자리 현황
5.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현황 등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
6. 그 밖에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수정 요구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한 시·도 기본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한 시·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해당 작성지침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통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에 관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전년도에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을 “대하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장(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최초로 수립하는 시·도 기본계획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수립하는 지원전략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전략 작성지침의 통보기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 제출기한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세부 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초로 수립하는 세부 지원전략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통보하는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 등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 등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 등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 립·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 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 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 립·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말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 립·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말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 립·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 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 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 시장·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 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 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 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 시장·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 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 원 시·도(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 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 에서 정한 전체 사업비의 규 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에서 변경하는 경우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 원 시·도(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 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 에서 정한 전체 사업비의 규 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에서 변경하는 경우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 원 시·도(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 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 에서 정한 전체 사업비의 규 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체 사업 시행기한의 범위에	2. 시·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체 사업 시행기한의 범위에	2. 시·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체 사업 시행기한의 범위에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도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시·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변경한 시·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립한 시·도 기본계획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도 및 지방대학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조직·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3. 지역인재의 취업 및 지역정주 현황

4. 지역 산업기반 시설 및 일자리 현황

5.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현황 등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

6. 그 밖에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한 시·도 기본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한 시·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연

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 전략의 수립·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해당 작성지침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통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에 관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등

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년도
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 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제7조제1항은 제외한다)은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으로, “위원회”는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로, “위촉을 해

제”는 “지명을 철회”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삭 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삭 제>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임기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지원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
원위원회 -----

----- 통보해

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2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야 ----.

④ -----

---- 대하여 -----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위원회 -----

----- 통보해 야 ----.

<삭 제>

<삭 제>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
설된 기관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
리법인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
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라 한다)을 포함[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

<삭 제>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
교육기관의 장과 그 밖에 지방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지역협업위원
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협
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
장이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회
의를 소집하며,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⑤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는 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업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
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
다.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삭 제>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
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2.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
정·개정과 해당 고등교육기
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
하는 고등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등
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및
그 반영 여부

5.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
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
법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은 30일 이상
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
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제특례 적용
기간

3.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
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장
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

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
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
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
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
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
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
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

<삭 제>

제20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법 제24
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삭 제>

1.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학과명 또는 학생정원을 변경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
는 계획의 변경·폐지 등에

따라 용어·문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35